

재정지원사업예산중복집행방지위원회규정

제정 2019.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간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예산중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지원사업간의 중복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2. 중복집행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예산계획 방지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지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정지원사업간 중복집행방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지원사업 총괄담당자(당연직) 및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관계 교직원의 출석)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또는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